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2. 30.부터 인천광역시 ○○○구 ○○로 ○○(○○동)에서 2008. 12. 30.부터 ○○○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오다 2014. 2. 3. ‘○○○ ○ ○○○점(40.3㎡, 약12평)’(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8. 9. 25. 23:30경 청소년 2명(16세)에게 주류를 제공(생맥주 1,000cc)하다 인천○○○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8. 10. 16.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2019. 1. 29. 영업정지 2개월(2019. 2. 13. ~ 4. 13.)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10년 동안 위법사항이 없었고, 고의적인 범의 사실이 없었으며, ② 사건 당시 먼저 들어온 남자 손님 1명과 여자 손님 1명 중 남자 손님은 예전 방문 시 신분증 검사를 해서 안면이 있었고, 함께 온 여자 손님 또한 짙은 화장과 미니스커트 등 외모상으로 전혀 만 19세 미만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성인인척 위장하고 속이는 행위에 속아 주류를 제공한 후에 여자 손님 1명이 합석을 한 후에 경찰에게 적발된 점, ③ 업소의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등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 ○○○점은 ○○○구 ○○로 ○○(○  
○동) 소재에 있는 40.3㎡(객석 27.2㎡ 포함)규모의 일반음식점으로, 2018. 09. 25.  
23:30경 ○○○등 2명(여, 만16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생맥주 1,000cc, 안  
주를 판매하여 인천○○○경찰서에 적발·통보되어 행정처분한 사항임.

나. 신분증 검사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중 가장 기본적  
인 것으로, 청구인의 업소는 신고업종이 '일반음식점'으로 누구나 출입이 가능  
한 업소이며, 특히, ○○○ 앞에 위치하는 등 청소년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  
변이기에 주류를 판매 할 경우 청소년 여부를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며, 실제 업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의 아내는 사건당일 홀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청소년  
들의 외모가 성숙해 보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소년 2  
명이 16세의 나이(2002년생)로, 옆 테이블에서도 쉽게 청소년임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심치 않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로서, 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소홀히 한 행위  
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임.

다. 따라서, 본 행정처분은 식품접객영업의 질서유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  
여 피청구인의 공익적 필요성이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임.

###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8. 12. 30.부터 인천광역시 ○○○구 ○○로 ○○(○○동)에서 2008. 12. 30.부터 ○○○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오다 2014. 2. 3. ‘○○○ ○ ○○○점(40.3m<sup>2</sup>, 약12평)’(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청구인은 2018. 9. 25. 23:30경 청소년 2명(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생맥주(1,000cc)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를 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인천○○○경찰서에 적발되었고 2018. 10. 4. 인천○○○경찰서장은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위 2)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8. 10. 16.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18. 10. 25. 피청구인에게 ‘법원 판결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10. 30. 본 사건의 행정처분을 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유보하였다.

6) 위 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종업원은 2019. 1. 25. 인천지방법

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받았고,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 ○○○○

피고인은 인천 ○○○구 ○○로 ○○에 있는 ‘○○○ ○○’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9. 25. 23:30경 위 ○○○ ○○에서 청소년인 ○○○(여, 16세)등 2명에게 생맥주 1,000cc, 안주 1접시 등을 합계 14,000원에 판매하였다.

7) 청구인은 2018. 1. 29. 피청구인에게 ‘ 2019. 2. 13.부터 영업정지를 하겠다’ 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8) 피청구인은 2019. 1. 2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9. 2. 13. ~ 4. 13.)의 처분을 하였다.

**다.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

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연령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청구인의 종업원은 청소년 2명(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등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받은바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사건 당시 먼저 들어온 남자 손님 1명과 여자 손님 1명중 남자 손님은 예전 방문 시 신분증 검사를 해서 안면이 있었고, 함께 온 여자 손님 또한 짙은 화장과 미니스커트 등 외모상으로 전혀 만19세 미만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성인인척 위장하고 속이는 행위에 속아 주류를 제공한 후에 여자 손님 1명이 합석을 한 후에 경찰에게 적발되었으며, 평소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철저한 교육을 시켰으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항에서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부여된 연령확인 의무는 단순한 증표제시 요청, 손님 외모에 의한 연령 추측 등과 같은 소극적 확인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통해 본인 여부가 가능한 신분증 확인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할 것이나, 사건 당일 청소년의 외모가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청구인의 주장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연령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은 분명해보이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고 하였고, 사업자, 명의자 등 책임자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업소 종업원들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며 종업원의 법규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평소 미성년자 주류제공에 대하여 다른 것보다 우선시하여 엄격히 관리하였고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고의성이 없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이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보호하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고, 그와 같은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은 그 자체로 법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사한 사례의 빈발을 막고 다른 영업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점, 적발된 청소년이 연령이 16세로 너무 어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